

● 제32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2)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신동원 의원 발의 】

의안번호 2242

### I. 개정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신동원 의원 (찬성33명)

나. 제안일 : 2024. 10. 16.

다. 회부일 : 2024. 10. 1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저출생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감소와 국가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바 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과 함께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자영업자등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인 자영업자등”용어 정의 (안 제2조제9호 신설)
-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의8 신설)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거 규정  
(안 제5조제1항제8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임신·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배우자 휴가급여 지원,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구매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무위임 조항 신설 및 시행일을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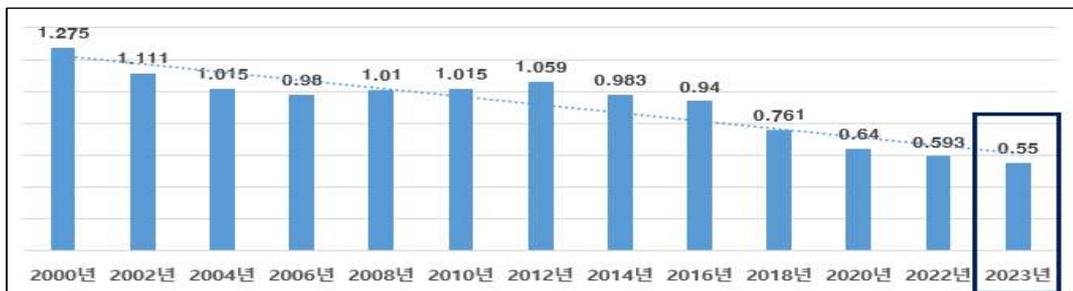
### 2 주요사항 검토

#### 가. 개정안의 배경

-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고 서울시는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상태임.

<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 : 2000년~2023년 >

(2023년 인구동향조사.통계청)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sup>1)</sup> 및 제10조<sup>2)</sup>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부터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는 예비양육자까지를 포함한 보다 확대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2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생애주기 별·대상별로 지원하고 있음.

<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

2 대 분 야 20개 핵 심 과 제	탄생 응원(10개)		육아 응원(10개)	
	예비양육자 지원	임산부 지원	돌봄·주거 인프라	양육친화 일·환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가정돌봄공백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등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난지동결 시술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모아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질 제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서울시 주요시설 활용한 결혼식	출산맘 몸·마음 토달케어	키움센터 등 초동돌봄 강화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첫만남 이용권	아이의 건강성장 지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결혼 공감 토크 콘서트	다태아 안심보험	신혼·양육친화 주거 지원	부모급여 등 양육자 경제적 지원	

- 다만,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저출생 지원책으로 인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고물가 시대 육아용품 구입 부담 등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체감도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히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출산 급여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 취지임.

## 나. 개별 조항 검토

### (1) 1인 자영업자등 용어 정의 (안 제2조제9호 신설)

- 안 제2조제9호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9. “1인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p>

- 기존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혜택과 달리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시 영업장을 단거나 생업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소득 감소나 출산기피를 하

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관련 정부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안 제2조제9호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미적용자’(자영업자,프리랜서)와 고용보험법 특례조항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1인 자영업자 등’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통계청에 의하면, 서울시 자영업자 81만5천명 중 63%인 51만6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임.<sup>3)</sup>

< 고용보험 출산급여 지원 대상 여부 >

구 분	근로자	노무제공자 <sup>4)</sup>	자영업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임의가입 (‘11년부터)	임의가입 (‘11년부터)
■ 실업급여	○	○	고용보험 가입시 지급	고용보험 가입시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	×
■ 육아휴직 급여	○	×	×	×

※고용보험법 특례조항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특례규정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

(2) 1인 자영업자등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의8 신설)

(1인 자영업자등의 임신부 출산휴가 급여)

- 안 제4조의8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의 대상인 ‘1인 자영업자 등’의 출산·휴가 급여 및 배우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한 신설 규정임.

3) 통계청(2023).지역별고용조사. 행정구역(시도)/종사상지위별 취업자\_서울특별시

4)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수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①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신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인 ‘고용보험 적용자’에 대해서는 240만원 ~ 6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자에 비해 90만원(하한 240만원 - 150만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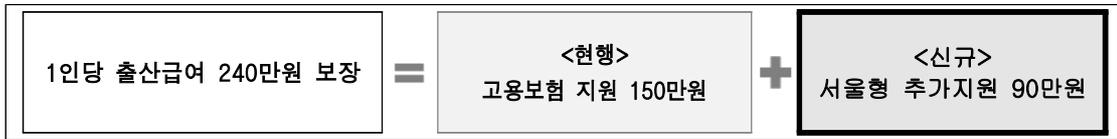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

구분	고용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li> <li>• 노무제공자(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자영업자</li> <li>• 노무제공자(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및 프리랜서 등</li> </ul>
출산급여	상한 : 630만원(월 210만원) 하한 : 240만원(월 80만원)	150만원 (월 50만원 정액)

- 이에 서울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 받는 출산급여에 ‘고용보험 적용자’의 하한액 기준의 부족분 만큼 급여를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사회보장협의 완료).

< 서울시 출산급여 신규사업 제도 비교 >

구분	임금근로자 등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서울시 신규사업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지원)
대 상 자	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사업과 동일)
지원금액	상한 : 630만원 하한 : 240만원	150만원	<b>90만원</b>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 보장위해 고용보험 지원금액 150만원에 90만원 추가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한편 ‘1인 자영업자 등’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또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인 ‘임금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간 유급으로 법적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인 ‘남성 1인 자영업자 등’은 배우자 출산 시 휴업 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보험 지원이 없는 실정임.
-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어 '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으며,<sup>5)</sup>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 등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음.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4.10.22.)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25. 2. 23.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20일), 청구기간(출산한 날부터 90일→120일), 분할사용 횟수(1회→3회)

-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가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급여 제도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1인 자영업자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출산 아내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급여를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신규 추진하고자 함(사회보장협의 중).

< 서울시 배우자 출산급여 신규사업(안) 비교 >

구분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법)	서울시 신규사업 (배우자 출산급여)
대 상 자	임금근로자	출산 아내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법적 보장일수	10일	(법적 보장일수 없음)
지원금액	① 고용노동부 : 401,910원(5일분) 우선지원대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401,910원(5일분) 지원 ② 사업주가 나머지 5일부담	최대 800,000원 (10일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10일분의 통상임금(803,820원) 수준 지원

-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6)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절차 결과에 따라 시행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6) 26조(협의 및 조정) ① (생략)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 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아울러 안 제4조의8제3항과 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7)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8)에 지방자치단체장 위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근거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자녀 양육부담 경감 신규 사업 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제1항제7호, 제8호)

- 안 제5조제1항제7호와 제8호는 자녀 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 육아용품 구매지원’ 및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구매 지원 8.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 호 사업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시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7)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8)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1항제7조의 신규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sup>9)</sup>인 ‘임신부’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sup>10)</sup>영유아 양육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통계청(2023) 「소비자물가조사」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3.9%) 유아동복,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sup>11)</sup> 임신·출산 과정에서 출산용품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완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바임.
- 한편, 안 제5조제1항제8호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서, 무주택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서울시 집값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sup>12)</sup>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임신·출산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야기되고, 자녀를 출산했으나 대출 자격 미달, 월세 거주 등 서울시 주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 주거 지원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

9)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8(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 자목의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중략)

10)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1)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총 지수 3.9% / 유아동복 10.9%, 종이기저귀 6.9%, 분유 5.0% 상승

12) 매일경제(2024.3.21) “내가 서울 왜 떠나는 줄 알아?”…탈서울 10만명, 눈물흘린 까닭,

만원까지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사회보장협의 중).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신규사업 >

구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금액)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자격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025.1.1.이후 출산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b>*국도부서울시 주거비사업 지원자격 미달(월세거주 등) 또는 중도탈락자</b>
	주택소유	본인 및 세대원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무주택자
대상 주택	용도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4억원 이내	5억원 이내	7억원 이내	3억원 이내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면적	전용 85㎡이하	-	-	전용 85㎡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3억원	-
대출기간		10년	12년	10년	-
지원 금리 또는 지원 금액	기본 금리	연 1.5~2.7%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연 1.1~3.0% (연소득에 따라 상이)	신잔액COFIX기준금 리+가산금리(1.6%) * 3.29% + 1.6% = 4.89% (*'23.11.1.기준)	<b>2년간 월30만원 (총 720만원)</b>
	지원 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3천만원 이하: 연 3.0% 3천~6천만원 이하: 연 2.5% 6천~9천만원 이하: 연 2.0% 9천~1억1천만원 이하: 연 1.5% 1억1천~1억3천만원 이하: 연 1.0%	

- 한편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추계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1,035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음.

<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비용추계 >

※ 비용추계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 총비용 = **103,589,700천원**(연평균 20,717,9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1인 자영업자등 출산 휴가급여 지원비용(안 제4조의8)	3,537,600	3,537,600	3,537,600	3,537,600	3,537,600	17,688,000
	영유아 양육경 위용품 구매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7호)	1,052,090	1,052,090	1,052,090	1,052,090	1,052,090	5,260,450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8호)	5,198,650	15,134,650	20,102,650	20,102,650	20,102,650	80,641,250
	소계(a)	9,788,340	19,724,340	24,692,340	24,692,340	24,692,340	103,589,7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9,788,340	19,724,340	24,692,340	24,692,340	24,692,340	103,589,700

주 :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

(4) 부칙개정

- 안 제1조 시행일을 명시하여 2025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입법 개정사항을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8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또는 출산한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등부터 적용한다.

- 안 제2조 소급입법을 통해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sup>13)</sup>.

#### 다. 부서 의견

- 집행부서인 저출생담당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임.

###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용품 구매지원,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급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 등의 임신·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의 재정투입 규모가 상당하므로 예산 확보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
- 아울러 서울시 집행기관은 조례에 지원근거 마련에 앞서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임.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서울시의회의 조례발의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참조.